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조지연·엄태영·박덕흠

강대식 • 구자근 • 고동진

강선영 • 백종헌 • 김종양

박충권 • 권성동 • 김정재

임이자 · 김도읍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라는 책무 를 부여하고 있음.

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후 급증하는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공동주택, 저수조, 세탁물, 각종배관 등 피해가 속출하고 피부 트러블,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데도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 따라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, 보 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 도록 함(안 제2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2(수질사고 피해보상) ① 수돗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보상절차, 그 방법,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조2(수질사고 피해보상) ① 수
	돗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
	하는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일
	반수도사업자는 그에 따른 보
	<u>상을 할 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
	정 기준과 보상절차, 그 방법,
	<u>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</u>
	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
	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
	체의 조례로 정한다.